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인제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25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11월 13일

발 의 자 : 김인제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유동균, 김정태, 이숙자, 남창진, 전철수, 우창운, 김기대, 유찬중, 우미경, 장홍순, 조규영, 이순자, 장인홍, 김광수(노원), 김혜련, 이승로, 박호근, 조상호, 성백진, 서윤기, 이신혜, 맹진영, 이윤희, 김용석(도봉), 허기희, 최웅식, 문형주, 권미경 의원(28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 제50조 제6항은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시정질문의 처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규정하고 있고, 시정질문을 한 의원에게 따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는 규정이 없어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결과 파악이 어려움
- 따라서 시장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시정질문을 한 의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시장 또는 교육감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0조제7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회법」,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0조(시정질문) ① ~ ⑥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⑦ (생략)</p>	<p>제50조(시정질문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⑦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</p>